파주시 공고 제2026-2934호

파주 법원2일반산업단지 내 처분신청 산업시설용지 매각공고(안)

파주 법원2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처분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매각 공고합니다.

1 매각대상

○ 대상용지 및 가격

구 분	소재지	용지면적(㎡)	건축면적(㎡)	양도가격(원)	공급방법
파주법원2 일반산업단지	법원읍 대능리 570-5번지, 570-6번지	3,406	-	2,230,399,840	입주심사 (필요 시 추첨)

2 입주자격

○ 신청자격 :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, 파주 법원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

○ 입주업종 :

- 1순위: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『표준산업분류』에 의한 C10 (식료품제조업)
- 2순위: 법원2관리기본계획(경기도 고시 제2026-299호)상 입주허용 제조업 (C10,C13,C14,C16,C17,C18,C20,C22,C24,C25,C28,C29,C32,C33)

※ 2순위 업종 희망자가 선정될 경우 관리기본계획변경 용역비는 매도자 및 매수자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하여야 합니다. 관리기본계획 변경 후, 변경된 업종으로 입주계약 가능함을 알려드리니, 공장운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상기 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상 배치계획에도 불구하고 소음·진동, 오염물질 배출 등 인근 업체에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.

- 파주 법원2일반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있는 입주제한 위해물질 및 임계배출량을 따라야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에 따라 **포름알데히드 및 6가크롬이 배출되는 업체는 입주를 전면 금지**

3 입주자 선정

○ 산업단지 업종별 입지여건에 적합하며 유치업종에 해당하는 업체
○ 입주업종 1순위에 우선 순위 부여
○ 입주신청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입주희망자 입회 하에 무작위 추첨
○ 입주선정자가 매매계약 미체결한 경우 차순위자에게 우선권 부여

※입주 자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

4 입주계약 및 처분절차

처분 신청 (처분신청자) ⇒ **매각공고** (파주시) ⇒ **매수자 선정 및 처분 통보** (파주시) ⇒ **입주계약 체결** (매수자 ↔ 市) ↓ **양도·양수계약 체결** (당사자)

5 입주신청 일정

구 분	일 정		장 소	비 고
매각공고 및 접수(방문)	2026.11.11.(수) ~ 2026.11.26.(목)	15일간	파주시청 홈페이지,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	www.paju.go.kr www.femis.go.kr
입주심의	2024. 11 27.(금)	1일	〃	업종 및 사업계획서 심사
추첨 대상자 통보	2026. 11. 30.(월)	1일	〃	유선 및 공문시행
입주자선정(추첨), 통보	2026. 12. 1.(화)	1일	미정	추첨시간 및 장소 추후유선 및 공문시행
입주계약 체결	2026. 12. 2.(수) ~ 2026. 12. 31.(목)	30일간	〃	선정업체 ⇔ 파주시 (1순위 선정시)
매매계약 체결			〃	선정업체⇔처분신청업체

※ 2순위 입주신청자가 선정될 경우, 상기 입주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일정은 적용되지 않으며, 관리기본계획 변경 행정절차(용역 등) 고시된 이후 별도 지정일에 체결예정.

※ 매각 공고 이후 입주신청자가 없을 경우 추가 공고 예정

6 대금지불 조건

○ 계약금 : 매매계약 체결시 10%
○ 잔 금 :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90%
○ 2순위 업종 희망자가 선정될 경우 관리기본계획변경 용역비는 매도자 및 매수자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하여야 합니다.
※ 매도·매수 업체가 정하는 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7 제출서류

※ 구비서류는 분양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합니다.
※ 관리기관에서 입주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구 분	제 출 서 류
입주신청	❍ 입주계약(심사)신청서 및 예정업체 사업계획서 각 1부 ❍ 사업자등록증 사본 ❍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, 주민등록등본(개인) ❍ 법인(개인) 인감증명서 ❍ 신분증 및 인감도장(법인일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가능) -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 (※ 공동명의인 경우 전원의 인감도장 지참) ❍ 기타 입주심사 관련 증빙서류
입주계약체결	❍ 입주계약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❍ 매매계약서 ❍ 신분증 및 인감도장(법인일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가능) ❍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

※ 구비서류는 분양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합니다.
※ 관리기관에서 입주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8 유의사항

○ 상기 산업시설용지는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산업집적법”)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처분 신청한 용지로,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처분신청자와 관리기관(파주시)에서 정한 양도 가격이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입주계약체결 이후라도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산집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관리기관(파주시)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 후 양도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

○ 2순위 업종 희망자가 선정될 경우 관리기본계획변경 용역비는 매도자 및 매수자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하여야 하며, 2순위 업종 희망자는 관리기본계획 변경 후, 변경된 업종으로 입주계약 가능함을 알려드리니, 공장 운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하고,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관련 사항은 처분신청자와 매수자 상호간 책임 하에 협의 및 처리하여야 합니다.

○ 입주 선정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기한 내에 처분신청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 선정은 취소되며,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기한 내에 건축물 등을 착공하지 않거나,「산업집적법」제42조제1항 각 호의 입주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용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.

○ 신청인은 매각대상토지에 대한 관계법령 상 건축허가 제한 또는 규제, 인허가 승인 및 도시계획 결정, 모든 영향평가 협의내용, 에너지 사용계획, 파주시 조례 등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법규(건축법령, 조례 포함) 등을 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・확인해야

하고,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.

○ 매수자는 매입신청 전 토지의 조성상태, 현황(형상,고저,암반,법면상태,공사계획평면도,연약지반 등) 및 사업지구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현장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,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.

○ 「산업집적법」 제45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안전관리, 공해관리,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, 입주계약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
○ 본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「산업집적법」, 「산업단지관리지침」, 파주 법원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에 따라야 합니다.

○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9 문의 및 접수처

○ 문의처 : 파주시청 기업지원과 산단관리팀 ☎ 031-940-5335(박시우 주무관)

○ 접수처 : 파주시청 기업지원과 산단관리팀

- 주　　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47 중앙빌딩 3층 기업지원과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인터넷이나 우편접수 등은 받지 않습니다.)

2026. 11. 11.

파 주 시 장